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412호)	윤준병의원	2025-03-27	-제426회국회(임사회) 제1차 전체회의 (20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7회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7.10.) 상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453호)	문대림의원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618호)	송옥주의원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624호)	여기구의원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167호)	이원택의원	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479호)	박수현의원	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153호)	서삼석의원	2025-06-27	-제427회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7.10.) 상정 ※ 소위 직접 회부(2025.7.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279호)	임미애의원	2025-07-04	

가.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0.)

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14.)

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신설).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 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 신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시행”을 “수립·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중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홍보 및”을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하고, “지원,”을 “지원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
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
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
-----변경·시행에-----

-.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
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

양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3.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
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4. (생략)

② ~ ⑥ (생략)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에 관하
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

1.·2. (현행과 같음)

3.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
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

-----.

1. 제2조의4-----

2. -----선정 및
확대-----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
보험-----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
체-----

⑧ (생 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u>확대하기</u>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 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손해평가인</u>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u>손해평가를</u>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u>정기교육</u>을 실시하여야 한다.	<u>들어야 한다.</u>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u>매년 확대하기</u>-----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손해평가인의</u>----- ----<u>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u>----- ----<u>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u>-----
---	---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략)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

-----.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관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육성 및 재
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
문성 제고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시범사업) ① -----
-----개발하
거나 도입하려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촉진하기 위하여 <u>교육·홍보</u> <u>및</u>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 금 <u>지원</u>,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u>교육·홍보</u> <u>를 하여야 하고,</u>----- --- <u>지원</u> 및 ----- -----.
--	--